01_06.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

◈ 적용범위

자동차(2륜차포함)와 자전거(경운기, 농업용트럭, 우마차 및 이와 유사한 차마 포함)와의 사고시에 적용한다. 다만, 자전거의 범위에 원동기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정요소

이하에서 수정요소로써 여러도표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되지 않는 수정요소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에서의 수정요소를 준용한다.

수정요소	설명
자전거가 굴곡 운행한 때	자전거인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취중 또는 기타 약물운전으로 인해 굴곡운전시는 최고치를 가산한다. 여기서 취중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잘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뛰어나온 경우	자전거인이 운전중 갑자기 멈추어 서거나, 반대 또는 차쪽의 방향으로 급변경시키는 경우와 도로상의 가로수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해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갑자기 돌출한 경우등이다.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	자전거가교차로를 최단거리로 통과하지 않고 비스듬히(사각)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이다.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운전한 때	전조등이란 타 조명기구에 의해 밝게 빛나는 야광판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나 자력으로 불빛을 내는 조명기구(손전등 포함)를 말하며. 자전거 또는 경운기 전조등이 있다.
자전거가 후면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자전거가 후면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부착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위험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를 운전중 사고시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한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도로가 있다. 다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의 운전방향과 동일방향으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인근"이란 대략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료변경(차선변경)중 사고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한다. 도로 구간에 진로변경 금지선 표시는 백색실선으로 표시한다.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11조, 12조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회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 보다 낮으므로 감산한다. 여기서 자전거인이 12세이하란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